

□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결과

1. 지적사항 총괄

(단위: 명, 천 원)

일련 번호	관계기관/ 부서	제 목	처분요구 등			비고
			처분 종류	재정상 (금액)	신분상 (인원)	
3-1	제주개발공사	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	징계	-	경징계2	
3-2		직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	주의		-	
4		임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시험 업무처리 부적정	주의	-	-	
5		경력직 채용 시 경력 확인 소홀	주의	-	-	
6		직원 채용공고 변경사항 위원회 심의절차 미이행	주의	-	-	
7		면접 전형 합격점수 산정 부적정	주의	-	-	

2.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

일련 번호	제 목	처분내역			
		조치 양정	소속	직급	성명
4	직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	경징계	제주개발공사	4급	###
		경징계	제주개발공사	3급	○○○

3. 현지 조치사항 일람표 : 해당사항 없음

4. 지적사항 요약

3 직원 채용업무 처리 부당 처리 (징계(3-2~5항)/주의)

-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2015년 5월 경력직 정규직원, 임시 계약직원 신입직 정규직원 등 총 29명의 직원을 채용하면서
 - 수출영업 분야 5급 상당 임시계약직의 경우 총원 수요조사 결과 결원이 1명이었고 채용공고 시 7개 분야에 7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각 분야별 채용 필요인원은 1명이었으며, 위 분야 응시자격으로 중국어 능통자를 필요로 하는데도 2차 면접 시 중국어 능력평가에서 ‘하’ 등급 평가를 받은 1명을 포함한 2명을 최종합격자로 부적정하게 선정함
 - 전형별 평가기준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·의결 절차 없이 사장 또는 인사교육팀장이 임의로 결정하고,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인사담당자들이 객관적인 심사기준도 없이 임의 판단하여 합격·불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등 서류전형 심사를 부적정하게 함

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에게

- 앞으로 직원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채용 분야별 채용 예정인원, 자격요건과 각 전형단계별 평가기준 등을 모호하게 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, 직원 채용 전형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
-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징계(2명) 요구

4

임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시험 업무처리 부적정 (주의)

-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2016. 4월 임시계약직 8명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서면 심의와 면접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면서
 - 1차 상사평가에서 70점 이상인자에 대하여 2차 면접심사를 하는 것으로 한 후 그 내용을 응시대상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았고, 1차 상사평가는 해당부서장 특정 1인의 단독평가만으로 결정함에 따라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게 하였음.

-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에게

- 앞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는 「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」에 위배되게 내부직원으로만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

5

경력직 채용 시 경력 확인 부적정 (주의)

-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2016년도 상반기 직원 채용계획에 따라 정규직 84명(경력직 28명, 신입 56명)을 채용하면서
 - 채용 공고에 명시된 관련 업무 경력을 갖추지 않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2명을 적격한 것으로 인정하여 2016. 8. 1. 채용하였고
 - 채용 이후 2016. 8. 22. 최종 합격자에 대한 호봉산정 등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전력조회를 요청한 결과 채용자격과 관련이 없거나 관련 업무 종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결과를 통보 받고도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

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에게

- 앞으로 직원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 시 경력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응시 자격을 갖추지 않았거나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자가 응시기회를 부여받는 일이 없도록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**주의요구**

6 직원 채용공고 변경사항 위원회 심의절차 미이행 (주의)

-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직원공개채용 및 상임이사 임원후보자 공모를 실시하면서
 - 응시자격 등 채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응시자격 및 면접시험 면제 자격 요건 등의 사항을 변경하여 채용공고를 실시하였음

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에게

- 앞으로 직원 채용계획 및 임원 공모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서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일이 없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**주의 요구**

7 면접 전형 합격점수 산정 부적정 (주의)

-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6회에 걸쳐 채용시험을 치르면서
 - 면접 전형 시 합격점수가 관련 규정에 70점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채용공고 시 면접 전형 합격점수를 80점으로 상향 공고하여 1차 면접시험에서 70

점 이상을 받은 자 101명이 80점 미만이라는 사유로 2차 면접시험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

•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에게

- 앞으로 직원을 채용하면서 「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」와 다르게 면접시험 합격 점수를 높여 채용 공고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